

의안번호	제621호
의결 연월일	2014. . . (제328회)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3월 3일

#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1
----------	-----

발의연월일 : 2014년 3월 3일

발 의 자 : 노광기, 장선배, 김양희  
박종성, 손문규, 최미애  
최병윤

### 1. 개정이유

- 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
- 나. 또한,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맞게 정비함 (안 제5조)
- 나.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함. (안 제12조)

### 3. 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협 의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와 협의하였음.
- 라.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을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의”를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로 한다.

제4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 제2호 중 “보육정보센터의”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로 하고,

제10호 중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를 “그 밖에 영유아”로, “위원장”을 “도지사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을 “1회에 한정하여”로 하고, “전임위원의”를 “전임위원 임기의”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반 정보의 제공, 상담, 또한 보육 교직원들의 취업 정보를 위하여”를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2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영아·장애아”를 “장애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조에 따라”로, “사용한 때”를 “사용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할 때”를 “될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해산한 때”를 “해산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 대하여”를 “위원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중 “보호자 등 기타”를 “보호자 및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1. ~ 5. (생략)</p> <p>6. “방과 후 보육”이란 <u>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책임) ①~② (생략)</p> <p>③ <u>보육교직원은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조(목적) -----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 ----- ----- ----- -----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 -----.</p> <p>제2조(정의)</p> <p>1. ~ 5.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제3조(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u>----- ----- ----- ----- .</p>

현행	개정안
<p>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육전문가</u></li> <li>2. <u>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u></li> <li>3. <u>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u></li> <li>4. <u>관계공무원</u></li> <li>5. <u>기타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u></li> </ol> <p>③~④ (생략)</p> <p>제6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4조(설치) ----- ----- 제6조에 <u>따라</u> ----- ----- -----.</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u></li> <li>2. <u>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u></li> <li>3. <u>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u></li> <li>4. <u>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u></li> <li>5. <u>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u></li> </ol>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능)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p>2. <u>보육정보센터</u>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p>	<p>2. <u>육아종합지원센터</u>의 ----- -----.</p>
<p>3. ~ 9. (생략)</p>	<p>3. ~ 9. (현행과 같음)</p>
<p>10. <u>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u>에 관하여 <u>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10. <u>그 밖에 영유아</u> ----- ----- <u>도지사 또는 위원장</u>----- -----</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u> <u>한하여</u>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위원의</u>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 ----- <u>1회에 한정하여</u>----- -----<u>전임위원 임기의</u> -----.</p>
<p>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 석한 <u>위원에 대하여는</u> 「충청북 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 급 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의 수당) ----- -----<u>위원에게는</u>----- ----- ----- ----- -----.</p>
<p>제3장 <u>보육정보센터</u></p>	<p>제3장 <u>육아종합지원센터</u></p>
<p>제12조(<u>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u>)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u>제반 정보의 제공, 상담,</u> <u>또한 보육교직원들의 취업정보</u> <u>를 위하여</u> 충청북도 <u>보육정보센</u> <u>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u></p>	<p>제12조(<u>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u>) ① ----- ----- <u>정보의 수집·제공 및</u> <u>상담을 위하여</u>----- ----- <u>육아종합</u> <u>지원센터</u>-----</p>

현행	개정안
<p>· 운영 <u>할 수 있다.</u></p> <p>②~⑤ (생략)</p> <p>제13조(설치 기준) 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u></p> <p>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5. <u>영아·장애아</u>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p> <p>6. ~ 10. (생략)</p> <p>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u>기타</u> 필요 인원을 둔다.</p> <p>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다.</u></p> <p>③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u>하며</u>,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p>	<p>----- <u>하여야 한다.</u></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설치 기준) ----- ----- ----- <u>제12조에 따른다.</u></p> <p>제14조(기능)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장애아</u>----- -----</p> <p>6. ~ 10. (현행과 같음)</p> <p>제15조(구성) ① ----- ----- <u>그 밖</u> <u>의</u> -----.</p> <p>② ----- ----- ----- 「영」 제15조제1항에 <u>따른다.</u></p> <p>③ ----- --- <u>하고</u>, -----</p>

현행	개정안
<p>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p> <p>④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 하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p> <p>④ -----</p> <p>-----</p> <p>-----</p> <p>-----</p> <p>----- <u>그 밖의</u> -----</p> <p>-----</p> <p>-----.</p>
<p>⑤~⑥ (생략)</p> <p>제16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p> <p>2. 수탁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탁의 취소) ① -----</p> <p>-----</p> <p>----- <u>경우</u> -----</p> <p>-----</p> <p>-----.</p> <p>1. ----- <u>제36조에 따라</u> -----</p> <p>----- <u>사용한 경우</u></p> <p>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p>
<p>3. 수탁기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할 때</p>	<p>3. ----- <u>제14조에 따른</u> -----</p> <p>----- <u>될 경우</u></p>

현행	개정안
<p>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u>해산</u>한 때</p> <p>② 도지사는 <u>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1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p> <p>1. ~ 2. (생략)</p> <p>3. <u>기타</u>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p> <p>② 운영위원회는 <u>보육정보센터</u>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4. ----- <u>해산</u>한 경우</p> <p>② ----- <u>제1항에</u> 따라 ----- ----- -----.</p> <p>제17조(운영위원회) ①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② ----- <u>센터</u>----- ----- -----.</p> <p>③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기타</u>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p> <p>④ (생략)</p>	<p>6. <u>그 밖에</u> ----- -----</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위원장은 <u>보육정보센터</u>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p> <p>⑥ (생략)</p> <p>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u>위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9조(주민참여)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u>보호자</u> 등 <u>기타</u>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⑤ ----- <u>센터</u>----- ----- -----.</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위원</u>에게는 ----- -----.</p> <p>⑧ ----- <u>그 밖에</u> ----- ----- -----.</p> <p>제19조(주민참여) ----- ----- ----- ----- <u>보호자</u> 및 <u>그 밖에</u> ----- -----.</p>
<p>제22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p>	<p>제22조(비용의 보조) ----- ----- 「영」 제24조에 <u>따라</u> ----- ----- -----</p>

현행	개정안
<p>수 있다.</p> <p>1. ~ 9. (생략)</p> <p>10. <u>기타</u>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u>소요되는</u> 비용</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그 밖에</u> ----- ----- ----- <u>드는</u> ----.</p>
<p>제2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u>대하여</u>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허위</u>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p> <p>4. (생략)</p>	<p>제23조(보조금의 반환) ----- ----- ----- <u>대해서</u>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거짓</u> ----- -----</p> <p>4.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29>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4>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